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2024나31841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2024나31841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3가단10658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권

피고, 항소인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홍서

변론 종결2024. 10. 10.

판결 선고2024. 10. 24.

제1심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3가단106587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① 피고 B, 피고 C과 D 사이에 2020. 3. 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② 피고 B, 피고 C은 D에게 위 지분 중 각 1/13씩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6행의 "205카불626호로"를 "2015카불626호로"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17행의 "2020. 9. 15."을 "2020. 7. 24."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18행의 "2020. 9."을 "2020. 9. 15."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10행부터 제5쪽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을 제4,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호사 K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은 L 변호사가 2022. 2. 17.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한 사실, ② 2021. 6. 30.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부동산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한 K 변호사는 원고를 알지 못한다고 회신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L 변호사가 2022. 2. 17.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인 2023. 2.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1년 이전부터 사해행위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13행의 "2015. 6. 24.로부터"를 "2015. 5. 28.로부터"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1행의 "잔여 원금 전부를"을 "원고가 D에게 잔여 원금 전부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8행의 "점 등에"부터 제10행의 "부족하고,"까지를, "점, ③ 피고들은 원고가 2005. 4. 11.부터 분할금 전체의 이자를 계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것과 D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건에서 이 사건 조정이 확정된 후 6개월 내에 원금 30,000,000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기재된 것을 들어 원고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2005. 4. 11. 이후의 기한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는 원고 스스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여 소멸시효를 완성시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이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에 위와 같은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가 이 사건 조정상의 1회 분할금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시점에 원고가 D에게 잔존채무 전액의 지급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20행의 "유일한 재산이"를 "유일한 재산인"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7행의 "가산한 가산한"을 "가산한"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19행의 "D가 망인으로부터"를 "D가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상당한 재산을"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1쪽 제3행의 "원상회복을"을 "원상회복으로"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1쪽 제4행의 "원고의"를 "D의"로 고쳐 쓴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장용범

판사김민순

판사이슬아

별지